

대한약리학회 학술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한약리학회에서 시상하는 제반 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의 종류 및 수상 인원) 대한약리학회에서 시상하는 학술상의 종류와 각 상의 수상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① 약리학 학술상 (Scientific Award for 0000 Year of the Pharmacologist) (1명)
- ② 젊은 약리학자상 (Scientific Award for 0000 Year of the Young Pharmacologist) (1명)
- ③ 우수논문 발표상 (10명 이내)

상의 명칭은 상금의 후원자 혹은 학회 공로자의 호를 따서 학술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 할 수 있다.

제3조(수상자 자격)

- ① 각 상의 수상자는 대한약리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수상 신청 연구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로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약리학 학술상 및 젊은 약리학자상의 신청자는 선정일 기준 지난 3년간 해당 약리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는 자로서 수상 신청 대표 논문의 1저자 혹은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.
- ② 수상후보자 신청은 대한약리학회 학술위원회 위원, 평의원의 추천, 회원 본인의 추천에 의해서 가능하다.
- ③ 각 상이 가지는 경중에 따라 각 상의 수상자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- 1. 약리학 학술상: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조교수 이상 정회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 한자.
 - 2. 젊은 약리학자상: 선정마감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 한자.
 - 3. 우수논문 발표상: 선정일 기준으로 학생, 연구원, 박사후연구원 등의 위치에 있는 자로 해당 학술대회에 초록 및 논문발표 (구연 혹은 포스터)를 하는 자

제4조(수상자의 제출 대표 연구논문) ① 각 상의 수상 대상 대표 연구논문은 다음의 각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.

- 1. 국내외 저명 의학잡지 또는 과학잡지에 게재된 논문
- 2. 수상 대상 연구논문으로서 유효한 게재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약리학 학술상, 젊은 약리학자상의 경우 시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2년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 까지 게재된 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 (예, 2008년도 수상자의 경우, 2006년 1월 1일부터 - 2008년 6월 30일).
 - 나. 우수논문 발표상의 경우 당해 연도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위해서 제출된 초록 및 당일 구연/초록 발표자
- 3. 순수한 국내 자료와 국내 의학자에 의하여 완성된 논문
- 4. 타 학술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논문

제5조(구비서류)

① 약리학 학술상, 젊은 약리학자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15일(공휴일인 경우 익일)까지 학회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2.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
3. 해당 대표 연구논문 별책 3부

단, 별책 인쇄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 교정쇄 사본으로 갈음한다.

제6조(연구논문 심사 및 평가 대상) ① 수상 대상자의 심사는 학술위원회에서 한다.

② 수상 대상자 및 대표 연구논문의 심사 절차는 대한약리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약리학 학술상 및 젊은 약리학자상의 심사 대상은 지난 5년간 발표한 국내외 학술논문, 특허, 학회 및 국내외 활동 등 약리학자로서 해당 분야의 학문을 선도하고 다양한 국내외 활동으로 약리학회의 위상 강화 노력 등을 함께 평가 대상으로 한다.

③ 우수논문 발표상은 제출된 초록 중에서 2배수를 서면평가로 일차 선정 하고, 2배수로 선정된 해당 후보초록은 학회 당일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 한다.

제7조(수상자 최종 선정)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각 상의 수상후보자는 대한약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수상자로 확정된다.

제8조(시상) ①시상은 매년 대한약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한다.

② 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.

③ 각 상의 상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약리학 학술상 | 200 만원 (세액 포함) |
| 2. 젊은 약리학자상 | 100 만원 (세액포함) |
| 3. 우수논문 발표상 | 10 만원 (세액포함) |

부 칙

①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②본 규정은 1999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학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②본 규정은 2004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②본 규정은 200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②본 규정은 2008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② 규정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.